

---

## Arctic Council 회의결과 및 향후 대책

---



2013.7.12(금)

유복근 (외교부 영토해양과장)

## 1 제8차 각료회의 개요

- 일시 및 장소 : 5.15(수) 09:00-11:00, 스웨덴 키루나
  - 5.14(화) 회원국 대표 만찬 및 5.15(수) 본회의 실시
- 주요 참석자 : 8개 이사국 외교장관(수석대표), 옵서버, 임시 옵서버, 상시참여자 등 약 300여명 참석
  - 우리측에서는 강정식 국제법률국장을 수석대표로 대표단 파견

## 2 회의 주요 결과

- 한국 등 임시옵서버 국가의 정식옵서버 가입 승인
  - 한국을 포함 중국, 일본, 이탈리아, 인도, 싱가폴 6개국이 옵서버 진출  
※ 당초 6개국과 EU 및 국제기구·단체들이 정식옵서버 지위를 신청(총 14개) 하였으나 EU는 결정 보류, 여타 국제기구 등은 금번에 탈락
- 북극 해상기름유출 준비 및 대응협력 협정 서명
- 북극의 비전 및 키루나 선언(Kiruna Declaration) 채택
- 의장국 인계인수(스웨덴→캐나다)
  - 캐나다가 향후 2년간 이사회 의장국 업무를 수행할 예정

## 3 정식옵서버 가입의 의의

- 북극관련 의사결정 과정에 능동적 참여기반 구축
  - 정식옵서버는 이사회 주요 회의, 워킹그룹 회의에 모두 참석가능하며 의제관련 서면발언 및 프로젝트 제안 가능
- 북극항로개척 등 북극의 경제적 이용 관련 접근기회 확보
  - 북극항로 이용, 에너지·자원의 지속가능한 개발에 보다 능동적으로 참여가능

- 북극항로 개통시 부산항이 국제물류중심 항구로 부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
  - ※ 북극항로 개통시 부산·로테르담을 기준으로 △운항거리는 최대 40%, △운항 일수는 약 10일 단축되고, △컨테이너 화물운송비용은 약 25% 절감되는 등 경제적 효과 예상

- o 북극항행에 필요한 쇄빙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시장의 동향 파악 및 대응

## □ 북극환경보호 및 기후변화 대응 참여

- o 북극지역 과학조사·연구 강화를 통해 기후변화 관련 국제적 노력에 동참

## 4 향후 대응 계획

### □ 북극이사회와 외교협력 강화를 통한 능동적 참여

- o 북극이사회 차기의장국(캐나다) 및 사무국(노르웨이 트롬쇠)간 상시적 협의 및 협력채널 구축

- o 이사국들과 양자 및 다자차원의 협력 강화

- 각국별 특성과 우리의 강점(주요해운국, 선박제조국, IT 강국)을 결합한 맞춤형 협력모델 개발

- o 북극이사회 워킹그룹(6개) 활동 적극 참여

- 프로젝트 제안 및 참여 등

### □ 범정부차원의 북극전략 수립

- o 기후변화 대응(환경보호), 과학적 연구, 북극항로, 에너지·자원의 지속 가능한 개발, 원주민 보호,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 관련분야를 포괄 하는 정책 수립

- o 민관간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을 통한 대응역량 강화

별첨 : 북극이사회 각료회의 결과 문서 /끝/

## 1 키루나 선언 (Kiruna Declaration)

### □ 경제적 · 사회적 조건 개선

- 북극 개발에서 비즈니스가 차지하는 중심적인 역할 인식
-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관련 이사회와의 작업 환영
  - 북극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이 국제적 지침과 원칙 준수를 권장
- 환극지 비즈니스 포럼(circumpolar business forum) 창설을 위한 태스크포스(T/F) 설립
- 법적 구속력이 있는 북극 “수색 및 구조 협정” 발효 평가
- 북극 원주민들의 전통적인 삶의 방식이 주민의 경제적 복지(well-being), 문화 및 보건에 중요함 인정

### □ 기후변화에 대응

- 기후변화로 북극이 중대하게 변화함을 인식하며 해결책을 찾기 위한 노력 강화
- 북극이사회 회원국이 온실가스 주요 배출국임을 인정하며 유엔기후 변화협약(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: UNFCCC) 하, 회원국 및 타 국가들이 협력하여 법적 구속력을 지닌 협약 등을 늦어도 2015년까지 체결할 것을 확인

### □ 북극 환경 보호

- "해상유류오염 대비 및 대응 협약" 서명
- 유류 오염 방지를 위한 태스크포스 구성
- "북극생물다양성평가"(Arctic Biodiversity Assessment) 제도 도입 환영
- 국제해사기구가 작업 중인 Polar Code의 조속한 완성을 위한 협력 강화
- 북극해양검토(Arctic Ocean Review), 생태계기반관리(Ecosystem Based Management) 등의 보고서 환영

## □ 북극이사회 역할 강화

- “북극 비전”(Vision for Arctic) 채택
- 노르웨이 트롬소 내 북극이사회 사무국 설치를 환영하며 제반 규칙 등 승인
  - 개정된 북극이사회 절차 규칙(Rules of Procedure) 승인
- 새로운 옵서버 국가를 환영하며, 북극 고위실무관리들이(Senior Arctic Officials) 채택한 옵서버 매뉴얼을 유념
  - 한국, 중국, 일본, 이탈리아, 인도, 싱가포르를 옵서버 국가로 승인
  - 유럽연합(EU)의 경우 옵서버 지위 부여를 긍정적으로 고려하되, 회원국 각료들 간 컨센서스가 생길 때까지 최종 결정은 연기
- 2011-13년간 이사회 의장국으로 활동한 스웨덴에 감사를 표명하며 2013-15년간 차기 의장국인 캐나다 환영

## 2 북극비전 (Vision for the Arctic)

### □ 평화로운 북극(A peaceful Arctic)

- 북극을 평화 및 안정의 지대로 만드는 것이 노력의 요체
- 해양법이라는 토대(framework)와 분쟁의 평화적 해결 준수 약속

### □ 집으로서의 북극(The Arctic home)

- 역내 · 전지구적 포럼에서 리더쉽을 발휘하여 우리가 ‘살 곳’으로서 북극에 영향을 미치는 도전 과제를 해결할 것 약속
  - 북극 원주민의 사회적 구조, 문화적 전통, 언어 등을 보존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책임 완수

### □ 풍요로운 북극(A prosperous Arctic)

- 경제적 협력을 북극이사회 최상위 의제(top of agenda)로 선정
- 현 세대 및 미래 세대를 위하여 자급자족할 수 있고 역동적이며 건강한 북극 공동체를 만들 수 있도록 북극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

## □ 안전한 북극(A safe Arctic)

- 환경 및 민간 안보(civil security) 분야에서 협력 증진
  - 해상 안전(maritime safety)은 역내·국제적 협력을 필요로 함을 인식

## □ 건강한 북극 환경(A healthy Arctic environment)

- 북극 환경이 특별하고 손상되기 쉽다는 점을 인식하고, 기후 변화가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사실에 우려를 표명
- 온실가스 및 기타 오염원 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할 것을 약속

## □ 북극에 대한 지식(Arctic knowledge)

- 북극에 대한 지식, 이해를 넓히며 북극 연구 강화

## □ 강력한 북극이사회(A strong Arctic Council)

- 북극이사회 회원 자격은 영구적으로 북극이사회 회원국들에게만 부여
  - 북극 원주민 조직은 이사회 활동에 활발히 참여하고 협의
  - 북극이사회의 모든 결정은 오타와선언 서명국(8개 회원국)이 보유한 배타적인 권리이자 책임(exclusive right and responsibility)
- 북극이사회는 옵서버에게 개방
  - 옵서버는 북극이사회 회원국들처럼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약속하며, 이사회가 정립한 옵서버 자격 요건을 준수
- 북극이사회를 강화하여 새로운 도전과 기회에 응하며, 정책 기획 및 수립 시 이사회의 역할 확대

## 3 북극이사회 고위실무관리자 보고서

### 가. 보고서 구성

- △보고서 요약, △북극이사회 작업반 보고서 : 2011-13년간 성취 및 2013-15년간 계획 보고, △기타 태스크포스 및 부속기구 보고서 : 2011-13년간 성취 및 2013-15년간 계획 보고, △부속서로 구성

## 나. 내용

- 북극이사회 작업반 보고서 : 2011-13년간 성취 및 2013-15년간 계획 보고
  - 북극오염대책프로그램(Arctic Contaminants Action Program : ACAP)
  - 북극모니터링평가프로그램(Arctic Monitoring and Assessment Programme : AMAP)
  - 북극동식물보전(Conservartion of Arctic Flora and Fauna : CAFF)
  - 비상사태예방준비대응(Emergency Prevention, Preparedness and Response : EPPR)
  - 북극해양환경보호(Protection of the Arctic Marine Environment : PAME)
  - 지속가능개발작업반(Sustainable Development Working Group : SDWG)
- 기타 테스크포스 및 부속기구 보고서 : 2011-13년간 성취 및 2013-15년간 계획 보고
  - "해상유류오염 대비 및 대응 협약", 생태계기반관리(Ecosystem-Based Management) 전문가그룹 보고서, 2013-15년간 북극지역 내 과학적 협력 증진 방안 등 포함

## □ 부속서

- 북극이사회 절차 규칙(Rules of Procedure) 개정판

### 참고 : 북극이사회 절차 규칙 초판(1998)과 차이점

- 사무국 설치 반영 (1, 10, 11, 16, 18, 19, 21, 22, 32, 42, 45, 46조 등)
  - 회의 개최국(Host Country)이란 표현을 의장국(Chairmanship), 사무국(Secretariat)으로 대체
- 옵서버를 회의 및 각종 활동에 초대 시 유보적 조건 부가 (37조)
  - 기존 절차 규칙 상 옵서버의 경우 (임시옵서버와 달리) 자동적으로 회의 등에 초대되었으나, 개정판에는 “고위실무관리자가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”(unless SAOs decide otherwise)이라는 문구가 추가되어 고위실무관리자의 결정이 초대 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시사
- 옵서버는 주로 작업반 차원(at the level of working groups)에서 북극이사회에 관여한다는 문구 추가 (38조)
- 부속서의 중요성 명시 (47조)
  - “부속서는 동 절차 규칙의 필수적인 부분(integral part) 구성”하며 동 규칙에 대한 언급 (reference)은 연관된 부속서에 대한 언급 포함
- “옵서버 가입 · 검토” 및 “옵서버 승인 기준” 통합 (38조, 부속서 2)
  - Nuuk 각료회의(2011)에서 채택한 SAO report(Nuuk 기준 포함) 내용을 포함하여 옵서버 관련 규정을 일목요연하게 제시

- o 부속기구에서 옵서버 활동 관련 매뉴얼
  - 옵서버 활동 관련하여 북극이사회 부속기구(subsidiary bodies)가 따르는 매뉴얼로 북극이사회 절차 규칙을 보완
- o 그 외 북극이사회 사무국 관련 제반 규정(2013년 예산 계획, 위임 규정(Terms of Reference), 직원 규정(staff rules), 재정 관련 규정(financial rules), 이사회 사무국장의 역할과 책임) 및 북극이사회 커뮤니케이션 전략 등 포함
  - 북극이사회 커뮤니케이션 전략의 2012-16년간 목표는 북극이사회가 북극 내 국제 협력을 도모하는 최고의(pre-eminent) 포럼으로 자리매김하는 것 /끝/

